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
PROSECUTION SERVICE

대구고등검찰청

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이종대

전화 053-740-3202 팩스 053-740-3209

보도자료 2017. 12. 26.(화)

자료문의 : 이종대 차장검사실 전화번호 : 053-740-3202 주책임자 : 차장검사 이종대

제목

대구고검 "검찰시민심사위원회" 출범,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

- □ 대구고등검찰청(검사장 황철규)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항고심사회와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하여 왔고,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폭넓게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하여
- □ 2017. 12. 1.자로 항고심사회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합한 『검찰 시민심사위원회』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감

1 검찰시민심사위원회 출범

- 기존의 항고심사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항고사건을 주된 심사대상 으로 하였고,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에 대한 사건과 중요 항고사건을 심사대상으로 하여, 한정된 대상사건 등으로 인해 그간 다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
 - ※ 대구고검은 2017년 1년간, 항고심사회를 총 16회 개최하여 38건 66명을 심의하였고(당청 항고심사회 심의율 2.2%로 전국 0.3% 대비 양호함), 검찰 시민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4건 13명을 심의한 바 있음

- 시민 및 민간전문가 참여의 활성화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7. 12. 1. 기존의 항고심사회(위원 25명)와 검찰시민위원회(위원 15명)를 통합 하여 <u>총 40명의 위원으로 "검찰시민심사위원회"(위원장 노진환, 영남유교</u> 문화진흥원장)를 구성함
- 총 40명의 위원을 10명씩 4개 분과로 나누어 <u>매주 1회 항고, 송무, 공판</u> 등 고검 업무 전반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<u>심의 횟수 및 대상을</u> 대폭 확대하였음
 - ※ 2017. 12. 20. 제1회 검찰시민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건 7명 심의
- 대구고검은 향후 <u>검찰시민심사위원회를 내실있고 모범적으로 운영</u>하여 <u>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·반영</u>함으로써 <u>시민들의</u> 기대에 부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음

2 주요 심의 사례 (기존의 항고심사회 및 검찰시민위원회)

1. 정당방위가 문제된 폭행 사건

- 피의자가 직장 상사를 폭행하는 고소인을 보고 달려가 폭행을 거의 마친 상태에 있던 고소인을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안에 대하여 **항고심사회**를 개최
- 위원들이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화면을 보고 분석한 후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어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 개진
-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, 고검에서 직접 보완수사한 후 약식기소

2. 학원장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

- 학원장이 학원생인 여중생과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고소한 항고 사건에 대하여,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특별한 관계에 비추어 성 관계를 한 사안을 아동복지법위반(법 제17조 제2호 "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")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
- 위원들은 "사리분별력이 약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믿고 의지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삼은 점에 있어 죄질이 불량 하다", "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벌해야 한다"는 등의 의견을 개진하여 고검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
- 피의자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(2017. 12. 26.)